

(공시보고서 표지 - 공통)

## 주요 경영상황 공시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3항에 따라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25년 04월 07일

금융투자협회 귀중

회 사 명 : 시그니처자산운용  
(영문명) Signature Asset Management Co., Ltd.  
(홈페이지) <http://www.signatuream.co.kr>

본 점 소 재 지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0, 13층(여의도동, 율촌빌딩)  
(전 화) 02-6337-0083

대 표 이 사 : 이진행

담 당 임 원 : (직 책)이사  
(성 명)김진미 (전 화)02-6337-0031

작 성 자 : (직 책)과장  
(성 명)김영기 (전 화)02-6337-0059

제 출 이 유 :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 제2-59조에 따른 주요 경영상황

※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3항, 「동법 시행령」 제36조제2항 및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 제2-59조에 따른 『법정공시사항』으로 그 내용에 허위,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49조제1항제15호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(제11-10호)

## 기타 주요경영사항

1. 제출사유 :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정관 개정
2. 주요 내용 : 이사회 권한과 관련한 조문 신설  
- 제41조 (이사회 구성과 소집)
3. 결정(발생)일자 : 2025.03.31.
4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: 해당사항 없음
5. 신구조문대비표

### 시그니처자산운용 정관 개정 신구조문 비교표

시행일 : 2025.03.31.

조항	변경 전	변경 후
제41조  (이사회 구성과 소집)	<신설>	3. 이사회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소집권자로 한다.  4.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심의,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사회는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지배구조법”) 제30조의4에 따른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의 이행을 감독한다. (2025.03.31. 신설)
제 49 조의 2  (감사의 내부통제 관련 권한 등)	<신설>	1. 제41조 제4항과 관련하여 감사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 1.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.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방안 마련 3.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마련 및 변경 4.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정 5. 그 밖에 이 회사의 내부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사가 심의, 의결한 사항  2. 감사는 임원(지배구조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‘임원’)과 대표이사가 지배구조법 제30조의2 및 지배구조법 제30조의4에 따른 관리조치와 보고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, 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